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2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 박희승·조 국·서영교

이훈기 • 윤준병 • 이원택

문금주 • 모경종 • 강유정

위성락 · 오세희 · 전용기

윤건영 • 이해식 • 정진욱

이성유 · 김태선 · 김정호

김 윤 • 이병진 • 임미애

최민희 • 문대림 • 소병훈

이재강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일자리·문화·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중대히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법은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혁신도시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 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공공기관 본사 중심으로 이뤄져, 핵심기능이 수도권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균형발전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력의 추가적인 이주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보다 내실있는 혁신도시육성・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도록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 신설, 제25조제1항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혁신도시 · 산업단지"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업 및 대학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우선 고려 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및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를 "인구감소지역으로의"로 한다.

4.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등 우선적 입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정 개 아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 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 ①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 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u>혁신도</u>시·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 산<u>업단지</u>-----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기업 및 대학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방으로 이 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구 감소지역 중 혁신도시로의 이 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 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기관의 소속기관 및 연구기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 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 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 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략)

- ③・④ (생 략)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 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 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 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 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

<u> 관 등 대통령령으로</u>
②
1. ~ 3. (현행과 같음)
4.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
관 등 우선적 입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구감소지역으로의

하여야 한다.

- ⑥·⑦ (생 략)
- (생 략)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②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 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